

제280회 임시회
기획경제위원회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맹진영 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맹진영
(더불어민주당, 기획경제위원회)

□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 맹진영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10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에
동참해 주신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
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
생각합니다.

□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인용된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
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 법령
을 최신화하고 중소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전에 관내 중소기업
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현장의 의견을
반영하고 중소기업의 육성 계획의 현실성을 제고하고자 하는
것입니다.

□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
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 감사합니다.